1. 예 산 총 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2,898,418	10,586,953
일반회계		320,493,890	9,614,817
특별회계		32,404,528	972, 136
	기타특별회계	32,404,528	972, 13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10,008	57,300
	수질개선특별회계	12,000,190	360,00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7,693	18,831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3,830,000	114,900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35,076	22,05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431,273	102,938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119,000	3,57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13,738	18,412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921,550	147,647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106,000	3, 180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4,110,000	123,300

- 제 2 조 2017년도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3,335,083천원이며, 재해·재난 예비비 700,000천원을 포함한다.
- 제 6 조 201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9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